

■ 법률 칼럼

■ 전문의 칼럼

#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여론이 비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재정 보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국민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증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인간의 모든 기관은 노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으며 관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의학의 발전과 함께 노령 인구가 늘면서 퇴행성 질병을 앓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무릎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욱 쉽게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기며, 비만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에 과부하가 생길 경우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염증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경구 및 국소 약물, 관절 내 약물 주사 혹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과도한 체중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고, 몸무게를 10% 정도 줄이면 통증을 약 50%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연골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무릎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자제하여야 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근력 운동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관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서는 실내 자전거, 물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등이 관절에 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약물 치료는 캡사이신 크림이나 플라렌 젤 등의 경피(topical) 제품이 경구형(oral) 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선호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등의 경구형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경구형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심장, 신장, 소화기관 등 여러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돌록세틴(Duloxetine) 등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계열의 약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등의 보조제를 먹는 것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많으신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보조제가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드시라고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보조제의 경우 부작용이 대부분 미미하고 개개인에 따라 효과를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선호하면 드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요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관절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치의나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같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